

● 환경부고시제2020-138호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2020년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6월 30일

환 경 부 장 관

2020년도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
전년도의 총 출고량은 1,166,809톤으로 한다.
인구수는 51,780천명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● 환경부고시제2020-139호

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과 제18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2020년도 전기·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6월 30일

환 경 부 장 관

2020년도 전기·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

2020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.042로 한다.

2020년도의 회수비용산정지수는 1.042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
● 환경부고시제2020-140호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제1항,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매입량, 인구수 및 반영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6월 30일

환 경 부 장 관

2020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매입량, 인구수 및 반영계수
전년도의 총 매입량은 464,984톤으로 한다.
인구수는 51,780천명으로 한다.
반영계수는 0.2로 한다.

부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●환경부고시제2020-142호

「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」 제정

「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」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6월 30일

환 경 부 장 관

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입금지 품목)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중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(PET), 폐폴리프로필렌(PP), 폐폴리에틸렌(PE) 및 폐폴리스티렌(PS)

제3조(조건부 수입허용) ①제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국내 대체재 조달 가능성 및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.

1.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
2.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입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허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 및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에 국내 대체재 조달 가능성 및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거나 관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4조(재검토기한) 환경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입금지 대상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(변경허가를 포함한다)를 신청했거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신고서(변경신고를 포함한다)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